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주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구정 참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 주민소통 활성화 포인트제의 적용 대상 규정 (안 제3조)
 -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를 중구에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구정에 참여하는 사람
- 포인트의 부여 및 관리 (안 제4조, 제5조)
 - 중구소통통합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소통 참여와 정책 설명회·공청회, 재난 복구 등 공익성 있는 오프라인 구정 참여 활동에 포인트를 부여
 - 포인트 관리 시스템을 운용하여 참여자의 포인트 관리

○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등의 규정 (안 제6조)

-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가능

○ 포인트 부여 제외 및 소멸기준 규정 (안 제7조, 제8조)

-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사람은 부여 제외
- 5년 동안 포인트가 누적되지 아니하는 경우 모두 소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행정지원과, 전화 : 02-3396-4523, 팩스 : 02-3396-8605, email : msyou@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 제정안 1부.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구정 참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란 구정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포인트“란 구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3. “인센티브“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서 참여자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4. “참여자“란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를 총괄하여 관리·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포인트 부여대상을 소관하는 중구 본청의 실·관·과,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를 중구에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구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포인트 부여 등)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포인트를 부여한다.

1. 중구소통통합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주민 참여
2. 오프라인 구정 활동
 - 가. 지역 환경정비, 재난 복구 등 공익성이 있는 구정 참여

나. 설명회, 공청회, 구정 설문조사, 교육, 행사 참여 등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한 경우,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포인트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를 위하여 포인트 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참여자의 포인트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는 관리부서 부서장이 관리하고, 포인트 발생 사업 부서에서는 참여자를 관리부서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등) ①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인센티브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누적 포인트는 참여자의 신청에 따라 우리 구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기부할 수 있다.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사람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

제8조(포인트 소멸기준) 포인트는 마지막으로 적립된 날부터 5년 동안 포인트가 누적되지 아니하는 경우 모두 소멸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